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2월 10일

○ 회부일자 : 1992년 2월 11일

3. 개정사유

학교신설, 소규모학교 통, 폐합으로 인한 본교폐지, 분교장격하, 분교장폐지, 행정구역 변경, 학과 개편등으로 충청북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학교신설(청주외국어고등학교외 6교)

나. 본교폐지(충주-복성국민학교)

다. 분교장격하 학교(수용국민학교외 14교)

라. 분교장폐지 학교(북일국민학교 청예원분교장외 19교)

마.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학교(증평여자고등학교외 1교)

바. 위치이전 학교(목도중학교)

사. 행정구역 변경지역 학교(추풍령국민학교외 4교)

아.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봉정국민학교)

## 5. 검토의견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따른 교육인구의 이동과 지역명칭의 변경등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 영동군면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91. 7. 5 제1332호)로 황금면이 추 풍령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고, 나.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91. 12. 31 제 1301호)에 따른 주소 변경 다. 택지개발지구 지적 정리에 따른 지번 부여로 주소가 변경되었음 라.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 신설계획안 및 본교폐지, 분교장폐지, 분교장 격하 기준(대통령령)에 의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의 내실화 도모,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근위원 위원장!

○ 위원장 한장훈 예, 말씀하십시오.

○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남국민학교, 윤광국민학교, 가경국민학교가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92학년도 학생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좀 밝혀 주시고 그 통폐합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